

2025. 9. 29.(월)

<본사 대회의실(11층)>

- 대전도시공사 노동조합 제23대 대의원 -

임시대의원회 회의자료

< 임시대의원회 안건개요 >

- [의결] 2025년도 임금 및 단체 교섭 안건 승인의 건



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전도시공사노동조합

임시대의원회 회의자료

I. 제23대 대의원회 구성현황

① 활동근거

- 대전도시공사노동조합 규약 제2절(대의원회) 제17,18조
- 대의원회 당선 공고('25. 02. 24.)

② 대의원회 구성개요

- 활동기간 : '25.02.24. ~ '26.02.24. ※제24대대의원 선출공고시까지
- 활동범위 : 조합규약 제20조(대의원회의 기능)
 ※제15조 제2항(해산, 위원장·임원 선출 등)을 제외한 총회의 기능
- 대의원구성

소속(배정인원)	이름	비고	소속(배정인원)	이름	비고
기획실 안전관리실 (2)	김 환		대전오월드(4)	박 지 호	
	이 민 주			전 형 진	
경영지원처 (2)	이 동 근			한 상 혁	
도시재생처 (2)	변 예 림		환경사업처(8)	김 철 규	
	오 수 지			주 호 종	
도시개발처 산업단지처 (2)	정 태 원			이 병 현	
	고 경 철			강 준 현	
건축사업처 (2)	강 영 민			권 재 휘	
	임 정 준			임 승 현	
				김 동 신	
				이 동 용	
합 계			총 20명		

Ⅱ. 임시대의원대회 안건

[의결] 2025년도 임금 및 단체 교섭 안건 승인의 건

분 류	세 부 내 용
단 체 교 섭	<p>□ 대전광역시투자기관노동조합 공통 안건</p> <p>[기타분야] 3~7급 통합 정원 관리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인 인사제도 운용 및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일정 직급(3~7급) 통합 정원 관리제 확대 시행 - 통합정원제 해당 각 직급 정원한도 삭제 및 4급으로 승진하는 인원은 퇴직자의 60% 이내로 적용 삭제 <p>[기타분야] 통상임금 소송 관련 인건비 총인건비 외로 지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상임금 관련 지방공기업 총인건비 개정통보(2025.09.10.)로 사측과 협의 중 <p>[임금분야] 급식보조비 20만원으로 인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는 지급액 조정 (월 172,000원 ▶ 월 200,000원) <p>[임금분야] 임직원 건강검진단가 40만원으로 인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직원 건강검진이 개인별 30만원의 예산으로 매년 시행중이나 이는 실질적 건강검진 항목 부실 및 검진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문적인 기관 참여유도를 위해 인상 필요 <p>[임금분야] 출산지원금 30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직원 출산 축하금 30만원 지원 <p>□ 임금교섭 분야</p> <p>[임금분야] 가족수당 인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0조(가족수당)에 의거 첫째 자녀 월5만원, 둘째 자녀 월 8만원, 셋째 이후 자녀 월 12만원으로 인상 <p>[임금분야] 업무대행 수당 인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직자 업무대행수당 현실에 맞는 지급액으로 인상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업무대행자 지정 후 20만원 지급(인당) <p>[임금분야] 통신비 제도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직원 업무에 필요한 통신비 신규 지원 제도 마련 <p>[임금분야] 시간외근무시간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고정OT 지급 방식 금지에 따른 기본인정 시간외 기본급 산입 <p>[복지분야] 출산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한 직원에 대해 태아 산모 검진비 지원 및 난임진단에 의해 인공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

□ **단체협약 분야**

[교육분야] **장기교육 기회 확대**

- 공사 직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장기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보직의 순환 및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업무 능력 향상 도모

[교육분야] **대내외 교육참여 확대**

- 전문직 및 교대근무 조합원의 사업장 필수인력으로 인한 교육 참여 기회가 저조함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 및 업무 능률성 저하에 대한 대안으로 대내외 교육참여 확대

[기타분야] **단체협약 정비 및 일부 개정**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의①	공사는 투명경영 실현을 위해 업무구상보고, 각종업무보고, 심사분석, 이사회 등 각종 위원회에 조합대표 또는 조합대표가 지정하는자가 참석할 수 있으며,	공사는 투명경영 실현을 위해 업무구상보고, 각종업무보고, 심사분석, 이사회, 인사위원회(제1, 제2), 징계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조합대표 또는 조합대표가 지정하는자가 참석할 수 있으며,
제26조	공사는 직원의 인사(채용, 승진, 승급, 휴직, 전직, 전보, 배치전환, 징계, 해고 등) 원칙에 대하여 조합과 서면협의를 한다.	공사는 직원의 인사(채용, 승진, 승급, 휴직, 전직, 전보, 배치전환, 징계, 해고 등) 원칙 및 결과 대하여 조합과 서면 합의 한다.
제79조의③ (추가)	※ 관련 법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22조(보고 사항 등)	①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경제적 재정적 상황 ②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③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기타분야] **최고호봉 연장**

- 최고호봉 연장(최고호봉 33호봉 ▶ 36호봉)

[기타분야] **인사제도 개선**

- 현재 설치된 단위 인사발령을 팀 단위 인사발령으로 전환

[기타분야] **전문직 순환보직 시행**

- 단협사항에 의거 전문직의 순환보직을 시행하고,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인력 배치 시 경력자 및 신규입사자의 비율을 반영

[기타분야] **기피현장 업무담당자 인센티브 지급**

- 기피현장 및 업무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Ⅲ. 기타 현안사항 논의